

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(주)서울지점 정보기술(IT)부문 공시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에 및 「금융IT보호업무 모범규준」에 따라
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.

1. 공시 사유

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보호부문인력비율,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및
모범규준상 금융ISAC 연계시기 미충족

2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예산비율
총임직원수의 5%이상 (1명)	정보기술부문인력의 5%이상 (1명)	정보기술부문예산의 7%이상 (1800만원/7% 126만원)

3.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(공시일 현재기준)

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 예산비율
충족	미충족	미충족
100%	0%	2.2%

4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

가. 정보보호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

□ 당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전업 재보험 지점으로서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
정보보호인력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나, 정보보호 인력을 충원할 예정.

나. 정보보호 예산 비율의 미충족 사유

□ 당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전업 재보험 지점으로서,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예산을
편성하고 있으며, 향후 사정에 따라 예산이 증가될 수 있음.

5.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
□ 당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전업 재보험 지점으로서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
관계로, 이용자에게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6. 금융ISAC(공동보안시스템)연계여부

□ 현재 연계여부 및 연계 예정일

현재 연계하고 있지 않음.

□ 미연계 사유

당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전업 재보험 지점으로서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연계하고
있지 않음.

본 공시화면은 2013년5월31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수시공시란에서 공시 내용을 열람
하실 수 있습니다.

2013.04.30

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(주)서울지점 대표이사 시미즈 사토시